

의안번호	제 15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2년 11월 22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5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2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조직개편 및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의 신설, 삭제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정비 : 17건(과 신설 2건, 과 명칭변경 2건, 업무이관 13건)
 - 과 신설 : 2건(안 별표 1)
 - 산단관리과, 인사혁신과
 - 과 명칭변경 : 2건(안 별표 1)
 - 유기농산과 → 스마트농산과
 - 교통정책과 → 교통철도과
 - 업무이관 : 13건
 - 총무과 → 인사혁신과
 -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학내 전보권 외 6건(안 별표 4)
 - 지방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청내 전보권 외 1건(안 별표 5)
 - 투자유치과 → 산단관리과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외 3건(안 별표 1)
- 자체 사무 정비 : 16건(신설 7건, 삭제 4건, 사무명 변경 5건)
 - 법 개정 및 업무일원화를 위한 시·군 위임사무 신설 : 7건(안 별표 1)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교통철도과)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사목의 사무에 한한다)
 - 청문(사목의 사무에 한한다)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 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교통철도과)
 - 등록의 표시 등

- 검사 등
- 과징금의 부과·징수
- 과태료의 부과·징수
- 법 개정 및 위임 권한이 없는 위임사무 삭제 : 4건(안 별표 1)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식의약안전과)
 - 마약류도매업자의 마약 도매보고
 - 마약의 소매보고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교통철도과)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취소, 사업정지 명령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지정취소, 사업정지 명령
 -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교통철도과)
 -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 법 조문에 맞게 사무명 변경 : 5건(안 별표 1)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교통철도과)
 -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
→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
 -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교부,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
→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발급,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
 -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 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교부
→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 신고와 말소 사실 증명서 발급
 - 자동차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 취소, 사업정지 명령
→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개선명령 지정 취소, 사업정지 명령
 -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교부와 반납처리
→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발급과 반납처리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세 정 담 당 관	1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자 연 재 난 과	1	·지방하천에서 허가·승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 등 신고·수리	하천법 제5조
	2	·지방하천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작성한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및 변경승인과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3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고시(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한다)	같은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4	·국가하천·지방하천의 유지관리 및 다른 공작물 등의 하천공사 시행·협의·통지·준공검사	같은 법 제27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5	·공무원인자의 공사시행으로 인한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보수에 관한 비용부담 및 하천공사 시행	같은 법 제29조
	6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다.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비 예치 및 관리 라.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 마. 인가내용 고시 바.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0조제2항 같은 법 제30조제4항 같은 법 제30조제5항 같은 법 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0조제10항
	7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지방하천 공사 준공인가 또는 검사의뢰, 유지·보수	같은 법 제30조제7항, 제8항, 제9항
	8	·시장·군수가 수립한 지방하천 공사 시행계획 및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 공사 실시계획 인가 시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
	9	·지방하천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허가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 가. 토지의 점용 나. 하천시설의 점용 다. 공작물 신축·개축·변경(다만,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하천공사는 제외)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4호

분야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 연 재 난 과	9	마.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하천법 제33조제1항제5호
		바. 죽목·갈대·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사.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2호
		아. 선박의 운항(2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
		자. 스케이트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차.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2 이상의 시군 관련사항 제외)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을 점용하는 물건에 새로 하천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건을 추가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
	10	· 지방하천에 관한 하천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시장·군수가 허가하는 사항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제7항
	11	· 지방하천의 점용 등 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 사용자의 동의서의 징구 요구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12	· 지방하천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 공사 및 하천점용 공사의 대행 및 통지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3	· 지방하천의 홍수관리구역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처분 등의 조치 가.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 나.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같은 법 제38조제1항
	14	· 지방하천 홍수관리구역에서 공작물 신축 또는 개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인가·고시·검사의뢰 및 준공검사	같은 법 제38조제4항
	15	· 지방하천의 오염방지를 위한 낚시행위 등 금지 지역 지정관리 및 공고	같은 법 제46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16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 및 하천보전을 위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 및 공고·통지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17	· 지방하천 점·사용허가의 실효·폐지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관리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 연 재 난 과	18	· 지방하천에서 법령 위반자에 대한 조치 명령· 처분(다만, 위임된 사항에 한함)	하천법 제69조
	19	· 지방하천에서 허가·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및 조치 명령	같은 법 제70조
	20	· 하천관리원의 임명 등	같은 법 제72조
	21	· 지방하천의 관리상황 점검 및 유지· 보수· 시정 등 조치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22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협의 등	같은 법 제76조
	23	· 지방하천의 하천공사를 위한 토지· 물건 등의 사용· 수용	같은 법 제78조
	24	· 지방하천의 점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사업장 등 출입· 검사	같은 법 제90조
	25	· 법령위반자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에 따른 허가· 승인 취소 시 청문	같은 법 제91조
	26	· 지방하천의 법령위반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98조
	27	· 하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28	· 보상금의 공탁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8조
	29	· 보상에 따른 이전등기	같은 법 제9조
	30	· 보상대상 결정 및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31	· 보상금액의 산정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32	· 보상금 지급의 통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33	· 도유재산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34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 수익허가	같은 법 제14조, 제20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소상공인 정 책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업 등록 및 관리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나. 변경등록 다. 영업폐지 신고수리 라. 대부업자에 대한 업무보고 및 자료 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마.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내용 통보 바. 영업정지 사.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 공고 아. 등록취소 청문 및 행정처분 사전 통보 자. 등록수수료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 	<p>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부터 제5항 같은 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제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제12조제7항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제13조제3항, 제4항 같은 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검사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관한 권한 나.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관한 권한 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제기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p>대외무역법 제33조 제5항 같은 법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같은 법 제59조제2항제3호</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 등의 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매가격표시 점포 지정권 나. 가격표시 의무자에 관한 관계자료 제출 명령권 다. 가격표시 의무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권한 라. 가격표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수 마. 가격표시 관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결과통보 	<p>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3항</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소상공인 정책과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에 관한 업무 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나. 협동조합 정관 변경 신고 수리 다. 협동조합 합병 및 분할 신고 수리 라. 협동조합 해산 신고 수리 마. 협동조합 과태료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119조
에너지과	1 2 3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정명령 ·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라.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한 자의 과태료 부과 징수 · 에너지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나. 업무보고 및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이행에 관한 사항 검사 다. 에너지사용량의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징수 ·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제한 명령 · 계량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및 계량증명업의 등록, 등록변경,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청문 등 나. 비법정단위 사용에 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 명령 다. 자체수리자 지정 및 변경신고 처리 라. 수입업자 및 계량기 제조업자 등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마. 계량기 검사 및 정기검사 면제, 정기 검사의 증인 바.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취소, 정량의 표시명령 정정요구 사. 보고 및 조사 등 아. 개선명령 자. 부정계량기의 처리,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차. 지위 승계신고 및 처리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3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5항 같은 법 제39조제6항 같은 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78조제4항 같은 법 31조제1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78조제4항 전기사업법 제71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3조, 제66조 같은 법 제6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제12조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제34조 같은 법 제32조, 제33조, 제42조 같은 법 제49조, 제50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2조, 제 55조, 제56조 같은 법 제63조 같은 법 제76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에너지과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34조 같은 법 제43조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관한 다음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와 교환·환불 또는 수리 등의 명령 등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51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한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75조제2항제2호, 제3항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설비(송배전부분제외) 1,000kw 이하 규모의 다음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의 지정, 연장 및 사업의 개시신고의 접수 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 라. 전기사업의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 부과·징수 등 마. 전기사업 허가취소 청문 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사. 공사 신고의 접수 아. 기술기준의 적합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6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6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같은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산 단 관 리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다만,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산업단지는 제외하며, 그 밖에 KGB복합, 옥산, 오창제2, 오창제3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은 청주시에 위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양도 미이행자 이행강제금 처분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3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진흥기금으로 조성한 도유재산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복지 정책과	1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변경 인가 (단,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기본재산 처분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외)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2	· 사회복지법인 임원 임면 보고	같은 법 제18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 사회복지법인 감사의 추천	같은 법 제1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4	· 사회복지법인 재산의 취득 보고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5	· 사회복지법인의 자산·회계에 관한 지도·감독	같은 법 제51조
	6	· 재해구호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나. 급식 또는 식품. 의료. 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 필수품 제공 다. 의료서비스의 제공 라.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마. 위생지도 바. 장사의 지원	재해구호법 제4조, 제5조
	7	· 입양축하금의 지원, 환수, 대장의 관리	입양특례법 제3조 및 제41조 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16조
보건 정책과	1	·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의 자격증 반환, 회수, 환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11조
식의약 안전과	1	·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도매업자의 허가 및 변경허가 나. 의료기관 마약류관리자 지정 및 변경 지정, 지정서 교부 다. 마약류취급자(관리자) 명부등재, 교부·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관리자) 폐업, 휴업, 재개업 등 신고 수리 마. 행정처분 바. 청문 사. 과징금 부과(징수)처분 아. 마약류취급자의 교육 자. 몰수마약류의 폐기·처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2조 같은 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부터 제12조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같은 법 제5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문화예술 산업과	1	· 전통사찰의 다음 사항에 관한 허가 가. 전통사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전통사찰 보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 재축·이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이 전통 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위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
건축 문화과	1 2	· 건축물의 착공신고 및 연장승인 등에 관한 권한 · 감리자의 지정 및 교체·보고·감리업무 지정 제한 등에 관한 권한	주택법 제16조 주택법 제43조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농업 정책과	1	· 농촌정비사업 중 도지사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승인하는 사업 중 다음사항 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준공검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
스마트 농산과	1 2 3 4 5 6	·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농업용수, 배수개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관한 다음사무 (단, 2개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는 제외) 가. 사업시행인가 나.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 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 다음 규모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 및 통지 가. 시장·군수, 토지소유자가 시행하는 50ha 미만의 논 경지정리사업, 밭기반 정비사업(단, 2개 이상의 시군에 걸친 경우 제외) · 도유재산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 도유재산 용도폐지	농어촌정비법 제9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20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축수산과	1	· 동물의 구조·보호 등에 관한 사무 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 나.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다. 유실·유기동물의 보호 공고 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반환 마. 보호비용 청구 바.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권 취득 사.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분양·기증 아.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2조
동물 방역과	1	· 도축장 외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수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 정책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 사항 가.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다.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라.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마.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영업 정지 명령 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사.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아.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자.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수리 차. 보고·검사 등 카. 배출자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타.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명령 파.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하.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전산기록관련 자료요구 거. 폐기물 처리신고 수리 너. 폐기물 처리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 더. 폐기물 반입정지명령 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 머. 의견제출 버. 과징금의 부과·징수 서. 대집행 및 비용징수 어. 청문 저. 과태료의 부과·징수 처. 폐기물 임시보관 장소 및 시설의 승인·변경 승인 및 통보 커. 허가증의 재교부 터.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및 보관·처리 기간의 연장승인 퍼. 교육대상자의 교육기한 연기, 선발·통보 및 자료제출 요청 	<p>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p> <p>같은 법 제13조의2 폐기물관리법 제25조</p> <p>같은 법 제25조의3 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32조제4항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39조의2 같은 법 제39조의3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6조의2 같은 법 제47조의2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8조의2 같은 법 제48조의5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제61조 같은 법 제68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제53조, 제56조</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다음 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건설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나. 건설폐기물의 임시 보관장소(변경) 승인 다.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 여부 판단·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라.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마.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징수 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신고 사.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수리 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개선명령·사용중지 명령 또는 폐쇄명령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p> <p>같은 법 제13조의2 같은 법 제21조, 제22조</p> <p>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25조, 제26조</p> <p>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9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 정책 과	3	자.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차.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및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카. 보고·검사 등 타.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파.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하. 방치폐기물의 처리 거. 방치폐기물의 처리명령 너.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등 디. 청문 러. 과태료의 부과·징수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변경승인(단,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1조, 제33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6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기 대 기 과	1 2 3 4 5	· 대기오염측정망에 관한 다음 사무(도시대기측정망, 도로변대기측정망에 한함) 가. 대기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나.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다.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다음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나.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다. 측정기기 조치명령 라. 조업정지명령 등 마.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신청 수리 바.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사. 허가의 취소,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아.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자. 위법시설에 관한 폐쇄조치 등 차.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카. 과태료의 부과징수 타. 개선계획서의 접수 파.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의 접수 · 대기관리권역 내 환경부령으로 정한 가정용 보일러의 의무설치에 대한 다음 사무 가. 가정용보일러의 제조·판매,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나.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연료용 유류에 관한 다음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제2항 같은 법 제4조제2항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제23조 같은 법 제30조제1항 같은 법 제32조제5항 같은 법 제32조제6항, 제34조 같은 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1조, 제22조 같은 법 제35조,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8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4항 같은 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같은 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 후 대 기 과	5	가. 연료의 공급·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나. 연료의 제조·판매 또는 사용금지 및 제한, 조치명령, 승인	같은 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제42조
	6	·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배출시설 신고 및 변경신고, 조치명령	같은 법 제44조제1항, 제2항, 제7항
	7	·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82조
	8	· 과태료의 부과 징수(단, 도 광역단속반에 의한 사항과 지방환경청장 및 유역환경청장의 권한 제외)	같은 법 제94조
	9	· 방제조치의 이행명령, 대집행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4항
	10	· 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사항(「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수질 1~5종 사업장)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 배출량 이상의 사업장 관리 나.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같은 법 제38조의2 같은 법 제38조의3
	11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오염물질 채취, 서류·시설·장비 검사의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이외의 대기 1~5종 사업장)	같은 법 제68조
	12	· 토양환경보전법 위반행위조사확인, 과태료 납부 통보, 의견진술의 기회 제공 등 조치	토양환경보전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3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나.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등의 개선 명령 다. 보고 및 검사 라. 과태료 부과·징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16조
	14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나. 오염기기 등의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 명령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연차보고서의 제출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5조의2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7조
	15	· 석면안전관리에 관련한 다음의 사무 가. 석면 등의 사용금지 등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기 후 대 기 과	15	나.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다.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16	라.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마.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주차자동차 단속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의 충전 방해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표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같은 법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6제2항
수 자 원 관 리 과	1	·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 사항 가. 먹는물에 관한 수질검사(먹는물관리법 제3조 제3호는 제외)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2항
	2	· 수처리제 제조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등록 및 변경등록 나. 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등의 신고 수리 다. 영업허가 등의 제한 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수리 마.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바. 출입·검사·수거 등 사. 지도 및 개선명령 아. 사업장 폐쇄 조치 등 자. 폐기처분 등 차.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카. 청문 타.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파. 위반사실 등의 공표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권한	같은 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제7항 같은 법 제24조 같은 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제41조제2항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47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제1항, 제3항 같은 법 제51조의2 같은 법 제61조제2항, 제3항
	3	· 유통샘물관련사업장의 출입·검사·수거 등	같은 법 제42조
	4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한 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나. 보고 및 검사 등 다. 과태료 부과·징수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제8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산 립 녹 지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사무(도유림의 경우 도지사 협의) 가.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나.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에 관한 사무 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림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 같은 법 제11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수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지정 등 보호수 보호관리 나. 보호수의 지정 및 지정해제, 고시 다. 보호수에 관한 행위제한 및 토지의 매수, 교환 등 	같은 법 제13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지역 또는 시의 읍·면 지역 일반국도 및 지방도 가로수의 조성·관리(국가지원 지방도 포함) 	가로수조성 및 관리 규정 제3조 <산림청고시 제2013-87호>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징수·환급 및 감면 나. 재해의 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복구에 필요한 조치명령 복구대행 및 대집행, 비용충당 및 예치금의 예치 다. 복구비의 예치 등 라. 산지전용지 등의 중간 복구명령 및 복구의무의 면제 마.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바. 산지복구 의무자 이의 신청의 접수 사. 복구대행·비용충당 및 대집행 아.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 보증금의 예치명령 및 예치면제 자. 복구비의 반환 차.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카. 불법산지전용조사 및 그 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명령 타. 청문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지관리법 제19조, 제19조의2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0조의2제4항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3항 같은 법 제49조, 제57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후계자의 선발·육성에 관한 사항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군 형 발 전 과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항
	2	· 이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3	· 시장·군수의 허가·인가 결정·승인 등으로 의제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같은 법 제30조, 제50조
	4	· 기반시설 중 다음 시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도시·군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시·군에 한함) 가. 도로(중로이하의 도로) 나. 주차장 다. 궤도 라.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마. 광장(중로 이하의 도로에 접한 광장) 바. 공원(어린이공원, 소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한함) 사. 공동구 아. 공공공지 자. 수도공급설비 차. 전기공급설비 카. 가스공급설비 타. 방송·통신시설 파. 시장 하. 열공급설비 거. 학교(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한함) 네. 공공청사(국가 및 도 기관 청사는 제외) 더. 문화시설 러. 연구시설 머. 사회복지시설 버. 공공직업훈련시설 서. 청소년 수련시설 어. 유수지 저. 방화설비 처. 저수지(댐 제외) 커. 방풍설비 터. 방수설비 퍼. 사방설비 허. 방조설비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균 형 발 전 과	4	고. 하수도 노. 도축장 도. 장사시설 로. 종합의료시설 모. 폐차장 보. 체육시설(골프장, 스키장 제외) 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오. 수질오염방지시설 조. 하천(소하천에 한함) 초. 자동차정류장(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에 한함) 코.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5	· 기존면적포함 15만㎡미만의 자연취락지구, 개발 진흥 지구의 지정 및 변경	같은 법 제30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6	·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승인·고시	같은 법 제32조
	7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고시	같은 법 제48조, 제53조, 제88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8	· 종전 법률 제2291호 도시계획법 개정 법률에 의하여 도시 계획이 결정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 공사 완료공고	같은 법 제98조
	10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폐지 및 이행 담보, 열람 및 고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부터 제91조
	11	· 행정처분 및 명령(시·군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같은 법 제133조
	12	·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발계획변경 중 도시개발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나.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고시 다.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협의 마.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의 감리 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수리 사. 도시개발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야. 공공시설의 귀속에 따른 협의 및 통지 자. 국·공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도시개발법 제4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제68조
	13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나. 선수금 승인 다. 준공검사 라. 공사완료의 공고,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보완 시공 등의 조치 마. 준공검사를 위한 협의 바. 조성토지 등의 준공전 사용허가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5조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2조 같은 법 제53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균 형 발 전 과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관한 다음의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공원, 어린이공원, 1만㎡미만의 주제 공원에 관한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나. 공원조성계획의 변경 다. 위의 가, 나 사무의 고시 라.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고시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p> <p>같은 법 제16조의2</p> <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p>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p>
도 로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도로점용 허가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 나. 점용공사의 확인 다. 점용료의 징수 라. 점용료의 징수제한 마. 변상금의 징수 바. 원상회복 사. 수수료의 징수 아. 과태료 부과징수 	<p>도로법 제61조, 91조</p> <p>같은 법 제62조제2항</p> <p>같은 법 제66조</p> <p>같은 법 제68조</p> <p>같은 법 제72조</p> <p>같은 법 제73조</p> <p>같은 법 제103조</p> <p>같은 법 제117조</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 행위금지에 관한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행위 다.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p>같은 법 제40조제3항제1호</p> <p>같은 법 제40조제3항제2호</p> <p>같은 법 제40조제4항</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 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 다. 발기인으로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라. 분할·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p>같은 법 제106조</p> <p>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1호</p> <p>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p> <p>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3호</p>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타 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 다.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징수 라. 법령위반 등에 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마.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바. 도로에 관한 조사 사.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보상(협의, 감정, 분할측량, 보상금지급, 잔여지매입, 소유권 이전 등) 아.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하기 	<p>같은 법 제33조</p> <p>같은 법 제35조</p> <p>같은 법 제69조, 90조</p> <p>같은 법 제96조</p> <p>같은 법 제97조</p> <p>같은 법 제102조</p>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p>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유재산 용도폐지 	<p>도로법 제52조제3항</p> <p>충청북도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4조</p>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p>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유재산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p>같은 법 제14조, 제20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철 도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나.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 관리 및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 다. 자동차신규등록, 등록증발급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부착봉인 등 라. 자동차변경·이전, 말소등록의 처리 및 수출이행 여부 신고와 말소 사실증명서 발급 마. 자동차압류등록의 처리 바.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사.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지정취소, 사업정지 명령 아. 임시운행허가 및 허가증, 번호판 발급과 반납처리 자.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처리 차.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경과의 통지 카.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사목의 사무에 한한다) 파. 청문(사목의 사무에 한한다) 하.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 제1항·제2항 및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명령·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p>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p> <p>자동차관리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p> <p>같은 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p> <p>같은 법 제14조</p> <p>같은 법 제16조</p> <p>같은 법 제20조, 제21조</p> <p>같은 법 제27조</p> <p>같은 법 제28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의2</p> <p>자동차등록령 제31조</p> <p>같은 법 제74조</p> <p>같은 법 제75조</p> <p>같은 법 제84조</p>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계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건설기계등록 및 등록증교부 나. 등록사항의 변경, 이전, 갱정처리 다. 등록말소 및 확인서교부 라.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 신청의 처리 마. 등록의 표식 등 바. 등록번호표제작사 지정 및 변경 신고 수리, 지정 취소 사. 등록번호표의 반납 아. 식별곤란등록번호표의 재재검 명령 등 자. 검사 등 차. 건설기계저당권 등록 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타. 건설기계의 강제처리 파. 과징금의 부과·징수 하. 과태료의 부과·징수 	<p>건설기계관리법 제3조</p> <p>같은 법 제3조, 제5조</p> <p>같은 법 제6조</p> <p>같은 법 제7조</p> <p>같은 법 제8조</p> <p>같은 법 제8조의2</p> <p>같은 법 제9조</p> <p>같은 법 제11조</p> <p>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p> <p>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p> <p>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의2</p> <p>같은 법 제34조의2</p> <p>같은 법 제35조의3</p> <p>같은 법 제44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9조</p>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p>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p>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시·군 내 사업의 한정면허,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철 도 과	5	· 자동차의 사용정지	같은 법 제89조
	6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제1항
		나. 사용약관 인가	같은 법 제40조
		다. 시설사용료 인가, 변경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1조
		라. 사용명령	같은 법 제45조
		마. 위치의 변경	같은 법 제43조
		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상속 휴지 및 폐지	같은 법 제48조
		사. 재정지원, 조합감독	같은 법 제50조, 제57조
		아.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조합설립	같은 법 제53조
		자. 조합의 정관규정 및 변경	같은 법 제54조
	차. 정관변경 등의 명령	같은 법 제56조	
카. 청문	같은 법 제86조		
7	·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0	
	나.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변경) 신고 처리	같은 법 제55조	
	다.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또는 임대 허가	같은 법 제56조	
	라. 임대 자가용 화물 자동차반환 신고처리	같은 법 제56조	
마. 신고포상금 지급 등	같은 법 제6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8	·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등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나. 대여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31조	
	다. 사업관리 위탁허가	같은 법 제32조	
	라. 사업개선명령	같은 법 제33조	
	마. 사업계획변경등록	같은 법 제10조제2항, 제35조	
	바. 사업의 양도·양수신고 수리와 법인 합병신고 수리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항, 제 35조	
	사. 사업의 상속신고 수리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35조	
	아.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수리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35조	
	자. 사업등록취소, 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 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같은 법 제85조	
	차. 청문	같은 법 제86조	
카. 과징금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 수립·시행	같은 법 제88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 거 법 령
교 통 철 도 과	8	타.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94조
	9	· 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시외버스 제외)	같은 법 제22조제1항
	10	· 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연장 및 차량 초과 운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1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군 내 사업의 한정면허, 수요응답형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면허·등록	같은 법 제4조
		나. 수송시설확인과 운송개시일 연기·개시기간연장 승인	같은 법 제7조
		다. 운임·요금의 신고 수리	같은 법 제8조
		라.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같은 법 제9조
		마. 사업계획변경 인가·등록 및 신고 수리	같은 법 제10조제1항
		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3조
		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4조
		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5조
		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16조
		차.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같은 법 제19조제2항
		카.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같은 법 제23조
		타. 등록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명령	같은 법 제85조
	파. 청문	같은 법 제86조	
	하. 과징금 부과 처분과 그 징수	같은 법 제88조	
	거. 과태료 부과처분과 그 징수	같은 법 제94조	
회 계 과	1	·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2	· 도유 일반재산 관리 및 매각(매각은 도의 사전승인을 득한 사항과 타 법률에 의한 손실험의 사항에 한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조

[별표 4]

직속기관,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4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위임대상 기 관	근거법령
인 사 혁 신 과	1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학내 전보권 · 부교수이하 임용권	충북도립 대학교총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 교육공무원법 제55조제5항
	2	· 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자치 연수원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3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지도사· 연구사 포함)의 원 내 전보권 · 5급 상당 연구관· 지도관의 공무원의 원내 전보권 (연구소장은 제외)	농업 기술원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4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연구사 포함)의 원내 전보권	보건환경 연구원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5	·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지도사· 연구사포함)의 당해 기관 내 전보권	당해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별표 5]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7항 관련)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인 사 혁 신 과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청내 전보권 ·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단, 개방형 직위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있으며,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임 및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임 및 수탁기관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위임사무 관련 법령

교통철도과

□ 자동차관리법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① 시·도지사는 등록원부를 비치(備置)·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등록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등록원부 및 그 기재 사항의 멸실(滅失)·훼손이나 그 밖의 부정한 유출 등을 방지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등록원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 소유자, 원동기형식, 차종, 용도, 세부유형, 구조장치 변경사항, 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 기재사항, 서식 및 기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6. 미완성자동차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한다)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같음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직접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붙인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③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⑥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붙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및 그 봉인을 회수한 경우에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하여야 한다.

⑨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영치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붙이거나 봉인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보험회사가 전손 처리한 자동차에 대하여 이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제4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수리(受理)하여야 한다.

⑦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1호·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4.>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 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장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⑪ 시·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① 삭제

②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이 없어지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의 발급

및 봉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첩형(凸形)을 관리하는 경우 도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유출(流出)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용 첩형을 도난 당하거나 유출한 경우
 4.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5.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6.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收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7. 자산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8. 등록번호판의 발급 또는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국토교통부장관이 등록번호판의 규격·재질·색상 등 제식(制式)에 관하여 고시한 기준에 위반되게 제작·발급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임시운행허가(이하 “임시운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

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제2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보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3. 삭제

4. 삭제

5. 제31조의4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게 그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 제30조의6제1항, 제45조의3제1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2. 제30조제6항 또는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조립·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
4. 제31조제3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결함에 대한 시정명령
5. 제32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 5의2.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제35조의9제1항제2호 중 제35조의10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 5의3. 제35조의10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
6. 제54조제2항(제65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6조에 따른 등록취소
7.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제33조제3항 및 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삭제

2의2.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4.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6조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9. 삭제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삭제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 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 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13의3.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 15의2. 제31조의4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 15의3.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15의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1의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 22.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 24.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삭제
 -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 4. 삭제
 - 5. 삭제
 - 6. 삭제
 - 6의2.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7. 삭제
 - 7의2. 제8조제3항 또는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 제8조(등록의 표식 등)** ① 등록된 건설기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고, 등록번호를 새겨야 한다.
- ② 건설기계 소유자는 등록번호표 또는 그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번호표의 부착 및 봉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표를 부착 및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임시번호표를 붙여 일시적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누구든지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13조(검사 등) ①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신규 등록검사: 건설기계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로서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하 “검사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에 계속하여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

3. 구조변경검사: 제17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거나 개조한 경우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설기계의 구조·규격 또는 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2. 등록번호 등이 건설기계등록증에 적힌 것과 같은지 여부

④ 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등록검사를 받은 건설기계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⑧ 시·도지사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2.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
- ⑨ 시·도지사는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건설기계의 사용·운영 중지를 함께 명령할 수 있다.
- ⑩ 시·도지사는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명령, 수시검사 명령 또는 정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의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번호표를 영치한 사실을 해당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⑪ 제10항에 따른 등록번호표의 영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설기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2의2.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영위한 경우
6. 삭제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21조의 건설기계사업등록을 할 수 없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2제7항, 제14조제4항 또는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표 제작자, 검사대행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

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4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 1의2.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1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 1의4.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2항에 따른 직원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폐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봉인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번호를 새기지 아니한 자
 - 2의2. 삭제
 3.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가리거나 훼손하여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또는 그러한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
 4. 제11조에 따른 등록번호의 새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또는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5의2. 제14조제11항 또는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 5의3. 제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사용하게 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또는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6.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자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등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시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2.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한 자
 5. 제9조를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7.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정비한 자
 8. 제1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9의2.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1.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말소사유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기계를 세워 둔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①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법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항제1호·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7호·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과태료: 시·도지사
 2.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3·제1호의4, 같은 조 제2항제7호·제8호, 같은 조 제3항제9호·제9호의2 및 제10호에 따른 과태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3. 법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4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5. 법 제44조제2항제5호 및 제5호의3에 따른 과태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6. 법 제44조제2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제1호

○ 사 유

- 본 조례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작성자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이수현